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69호 2015. 2. 2.(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5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
지규칙 ----- 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6호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
인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2호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3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6호 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송달 공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7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 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제5조제1항 중 “징계보다 위의 징계로”를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하고, 제2호 중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로 하고,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1의2를 각각 적용한다.”를 “음주운전과 청렴의 의무 위반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로 하며 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2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45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6호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29-2번지 외 2필지
 - 나. 면적 : 2,121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장원건설
 -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29-2
 - 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장 장정호(인천 서구 가좌동 308)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 2015. 1. 2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m ²)	2,121	건축면적(m ²)	646.462
건축연면적(m ²)	6,705.047	건폐율(%)	30.48
용적률(%)	245.63	건축물의 높이(m)	34.44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규모	지하1/지상12층(1개동)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공 동 주 택	구분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53m ²	56m ²	58m ²	59m ² (A)	59m ² (B)	59m ² (C)	59m ² (D)	64m ²	72m ²
	계	61	1	1	2	9	9	7	1	30	1
	분양	61	1	1	2	9	9	7	1	30	1
	임대	-	-	-	-	-	-	-	-	-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0. 변경사유 및 내용

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변경

나. 사업시행자를 (주)장원건설에서 두현종합건설(주), 시공자를 (주)장원건설에서 두현종합건설(주)로 변경함.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북항로 76-37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1. 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1-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원창동 390-33	북항로 76-37	2009-08-28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인천 서구 경서동 849-9	청라커널로319번길 3-8	2011-06-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962-12	청라커널로 229-14	2011-06-29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이 있음을 부각	
4	인천 서구 원창동 138, 136-7	봉수대로501번길 58-11	2009-07-01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오류동 1640-11	검단천로 359	2009-09-22	김포시계 검단천에서 시작되어 검단천로로 명명	
6	인천 서구 오류동 1632-8	이든로 44	2012-10-25	이든로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당하동 765-8	드림로 438-4	2009-07-10	수도권매립지 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8	인천 서구 오류동 1634-2	도담로 176-4	2012-10-25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순 우리말에서 착안	
9	인천 서구 오류동 863-2	원당대로269번길 2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오류동 1629-3	도담3로 14	2012-10-25	도담로에서 세번째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당하동 1110-3	청마로134번길 24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금곡동 347-7	봉수대로1581번길 20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 약 1,5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불로동 580-2	검단로744번길 40-65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 약 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1.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염곡로 74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1-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가좌동 150-11	염곡로 74	2015-01-23	건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96, 1496-2, 1497	길주로 220-18	2015-01-14	건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0-9	완정로 154	2015-01-21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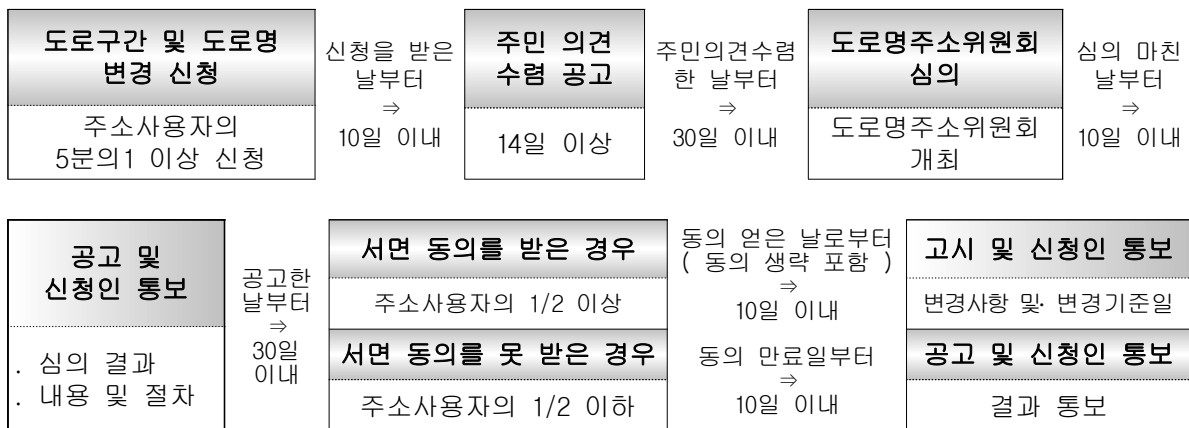
2015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시일 : 2015. 01. 30.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구분	합계	부여	변경	폐지	비고
도로명·도로구간 수	3	2		1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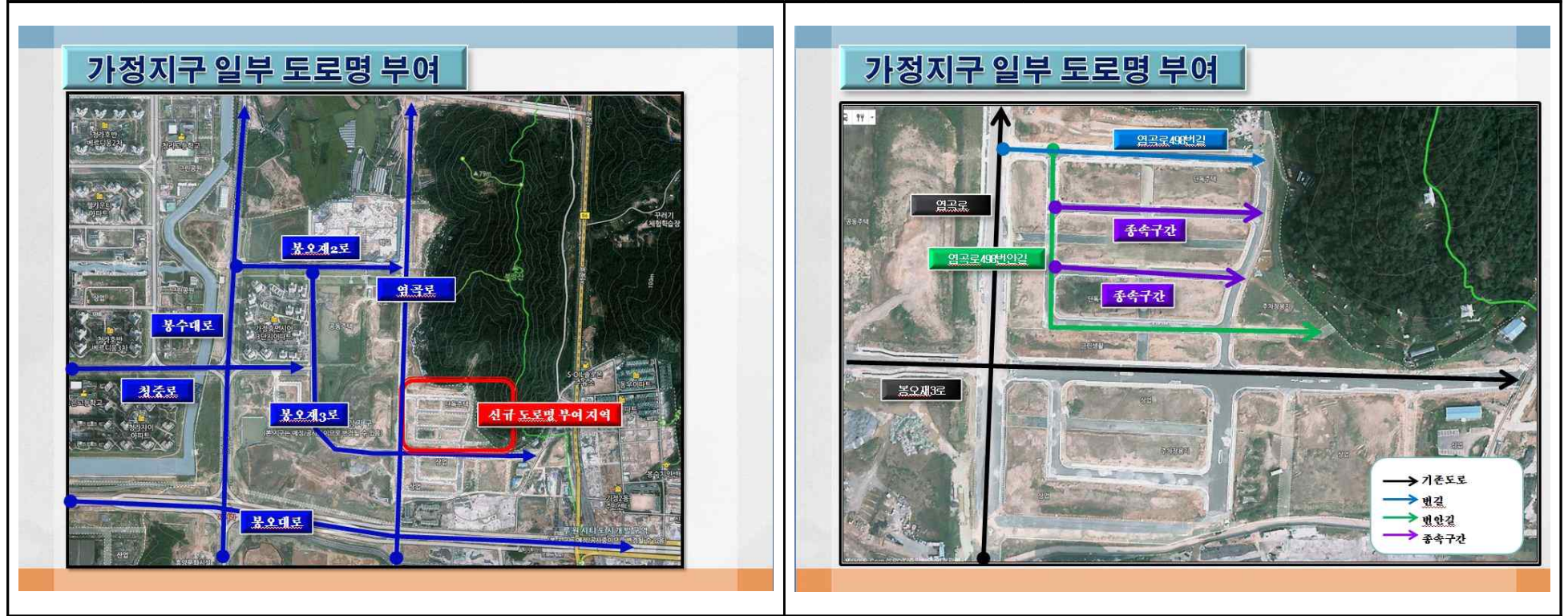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연번	도로 구분	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km)	폭(m)			
1	길	염곡로498번길	가정동	120-81	가정동	산30-1	0.236	14.988	20	가정1동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
2	길	염곡로498번안길	가정동	143-1	가정동	149-4	0.394	12.44	20	가정1동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조서

연번	도로 구분	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폐지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km)	폭(m)			
1	길	청마로33번길	당하동	산217-9	당하동	945-1	0.176	8	20	검단4동	아파트 조성에 따라 도로가 없어짐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 되어 2014. 8. 7일 자로 시행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
-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을 “연임” 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
-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실장으로,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변경 함.(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총무국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5.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 대대장급

6. 구의 관할구역 교육장
 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 책임자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3. 법 제66조의9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난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4.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제3조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조정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등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활동)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

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등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실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33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2014.11.10.~ 2015. 12.3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41번지 일원	L= 400m B= 12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사업의 근거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7-36호(2007.07.11.)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68호(2014.11.10.)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호(2015.01.12.)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4.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15. 01. 28. ~ 2015. 02. 11.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5)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는 2015.03월 이후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당사자와 보상협약이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
-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용 지 조 서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계				49,196	5,047							
1	불로동	141	141-2	구	1,6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불로동	135-3	135-8	과	2,998	44	박경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1-7 신라아파트 1**-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89번길 25, 1**동 9**호				
3	불로동	135-4	135-9	전	3,156	260 (1/4)	강혁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4 송도해모로아파트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				
	불로동	135-4	135-9	전	3,156	260 (3/4)	강경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				
4	불로동	150-2	150-3	구	145	10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불로동	135-5	135-10	답	2,692	172	김경일	김포시 사우동 12**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51번길 72-*	김포농업협동조합 (풍무동지점)	김포시 북변동 301-2	근저당 지상권	
6	불로동	151-3		구	238	23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불로동	129	129-3	도	2,455	962	국	농림축산식품부					
8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2/9)	김영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동 1***호	검단단위농업 협동조합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97-1	근저당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3/9)	이정희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4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2/9)	김수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1**동 2***호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2/9)	김영상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4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9	불로동	152-2		구	231	23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불로동	156-1		구	2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2/9)	김영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동 1***호	검단단위농업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97-1	근저당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3/9)	이정희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2/9)	김수진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1**동 2****호	협동조합	김포군 김포면 비안리 297-1	근저당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2/9)	김영상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12	불로동	153-2		구	291	29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불로동	132	132-2	구	1,041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불로동	154-2		구	17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불로동	156-2		구	7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불로동	128-3	128-6	전	5,341	137	맹은숙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동 1***호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동 1***호			
17	불로동	155-2		구	251	251	삼선태순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7*				
18	불로동	156-3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불로동	175-1		구	387	3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불로동	128-4	128-7	답	3,536	308	이한택	김포면 감정리 49*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25번길 7*	김포농업협동조합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289-2	근저당
21	불로동	128-5	128-8	답	748	152	이한택	김포면 감정리 49*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25번길 7*			
22	불로동	175-3		답	440	4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불로동	120	120-2	구	7,011	1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불로동	173-6	173-7	전	1,560	10	김형주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2 신명아파트 1**동 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4길 6, 3**호	김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학대로75길 17, 1**동 6**호	가등기
25	불로동	185-34	185-44	도	1,624	56	국	건설교통부				
26	불로동	96	96-5	구	9,971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96-6	구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불로동	313-6	313-15	도	119	19	홍기영	충남 천안시 쌍용동 산44-*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35, 1**동 1***호			
28	불로동	174	174-1	도	987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36호

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15. 1. 28. ~ 2015. 02. 12.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송달처주소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사유
1	심**	서구 가정로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수취인불명
2	박**	서구 가좌동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주소불명
3	박**	서구 가좌동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주소불명
4	이**	서구 가좌동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주소불명
5	김**	서구 가남로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수취인불명
6	권**	일산동구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폐문부재
7	김**	강원 영월군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폐문부재
8	장**	서울 서대문구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폐문부재
9	한**	고양시 덕양구	인천 서구 가좌동	가남로 ****	2015-01-02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좌동의 머릿글자와 석남동의 뒷글자를 따서 명명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37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급금액 : 세대당 금600,000원 범위 내
3. 보조대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주민등록 기준)
 - 201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금4,203,326원) 이하인 세대
4.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내용 :
 - 2014. 1. 1. ~ 2014. 12. 30. 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다만, 지원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6.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조사 → 결정 및 개별 통보(30일 이내)
7.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5. 1. 28. ~ 2. 27.
 - 접수 및 문의 :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 032-560-4682)
 - 신청시 제출서류(우리 구 도시개발과에 서류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서면심사 방법 추가 및 구성인원 보강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활동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경쟁제한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 수 증원(안 제4조)
- 회의개최 시 위원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6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 12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u> <u>회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u>제3조제3항의</u>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호의</u>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략)</p> <p>6. <u>기타</u>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u>제2조의</u>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u>인천광역시 서구</u> <u>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u> <u>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u>의----- ----- -----.</p> <p>제2조(기능) <u>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 -----</p> <p>제3조(개선권고) ① ----- <u>제2조에</u> 따른----- ----- ----- -----.</p>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

② 제1항에 따라-----

----- 없으면-----
-----.

제4조(구성) ① -----
----- 1명을 포함한 15명 -----.

② -----
----- 위원 -----

-----.

③ ----- 각 호의 사람 -----.

1. 5급 이상 -----
----- 있었던 사람
2. -----

----- 있었던 사람
3. -----
----- 있는 사람
4. -----

----- 있었던 사람
5. -----

<p>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 <u>시행</u>에----- -----.</p>

< 의안 소관 부서명 >

<p>기획예산실 법무팀</p>	
<p>연 락 처</p>	<p>(032) 560 - 4062</p>

【붙임3】

관계법령 발췌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서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0 0 0

주소/전화번호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